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와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인상동결로 효율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, 전문연구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.

2. 근거법령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,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3. 주요골자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변경(안 별표2)

현 행			개 정 안		
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
분뇨수집· 운반수수료	10ℓ	290원	분뇨수집· 운반수수료	10ℓ	310원
정화조청소 수 수 료	기본(0.75㎡)	16,200원	정화조청소 수 수 료	기본(0.75㎡)	16,600원
	초과(0.1㎡당)	1,170원		초과(0.1㎡당)	1,200원

4. 검토의견

□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

-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담행위에 대한 판단작용으로써 최근 부의 양극화 현상과 내수경제침체 등으로 서민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
-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에 관하여 상정된 인상 조정건에 대하여는
- 다년간의 수수료 인상 동결과 유가 및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수수료에 대한 일부인상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부담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고 심도깊게 검토·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.

□ 따라서 그간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영업현황을 살펴보면

- 정화조 청소업체 《(유)현대정화사, 대표 장창조》는 2002년~2004년까지 해마다 2천만원~5천만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했고
- 정화조 청소업체 사하정화사 《대표 허창선》는 2002년~2004년까지 해마다 2천만원~4천만원 상당의 흑자를 내고 있음.
- 그러나 분뇨 수집·정화 운반업체 동남위생사(허진영)는 2002년 설립허가된 법인경력이 일천한 신규업체로써 2003년~2004년까지 1천만원~2천만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업체별 영업현황을 분석해 보면

(유)현대정화사와 사하정화사 등 기존 정화조 청소업체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기법으로 흑자를 창출한 반면 신규업체인 「동남정화사」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물량수주와 경영노하우 부족등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의 부담가중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됨.

※ 정화조 처리실적 대비표(2004년기준)

(유)현대정화사 63,560㎡ 10,980개, 사하정화사 55,838㎡ 9,475개,
동남위생사 1,821㎡ 1,073개

□ 그리고 인상조정 대상부문에 대하여 각 구별 비교분석과
우리구와의 상대적 대비를 확인해본 결과

○ 정화조 기본요금에 대하여는

- 16,800원 3개구
- 16,700원 6개구
- 16,400원 1개구
- 16,200원 6개구

※ 우리구는 16,200원을 받고 있으며, 시평균은 16,513원입니다.

○ 정화조 초과요금에 대하여는

- 1,230원 3개구
- 1,220원 4개구
- 1,200원 2개구
- 1,190원 1개구
- 1,170원 6개구

※ 우리구는 1,170원을 받고 있으며, 시평균 1,199원입니다.

○ 분뇨 수집·운반 요금에 대하여는

- 330원 1개구
- 300원 8개구
- 290원 3개구
- 250원 3개구
- 230원 1개구

※ 우리구는 290원을 받고 있으며, 시평균은 286원입니다.

□ 위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

-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상생의 차원에서 인상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◆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은

① 정화조 기본요금에 대하여는

16구·군중 가중치가 높은 12개구를 대상으로 16,700원 6개구와 16,200원 6개구를 산술 평균한 16,450원과 시평균 16,513원을 사사오입 해본결과 16,5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
② 정화조 초과요금에 대하여는

시평균 1,199원을 사사오입한 1,200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③ 분뇨수집·운반요금에 대하여는

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분뇨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적정단가가 314원으로 나왔지만 16개구·군중 8개구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300원을 받고 있으며 구·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구도 300원 수준으로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□ 이처럼 서민경제에 맞추어 수수료 등을 조정시행 함으로써

- 서민생활보호와 민생경제안정 등 행정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또한 『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령에 수수료 등 인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

□ 위 일부 개정 조례건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나

분뇨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변경(인상안)에 대하여는 서민생활보호라는 공익과 업체의 이익증대라는 사익간을 비교형량하여 서민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의결함이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됨.